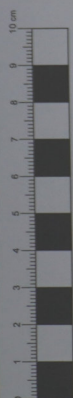


會員總數

主席會員數

議止市經口貝改監才傳

藏長之經學全與牙經期水藏了到歟
改監外乞上准皇之達職場川治外孫來上無記名秘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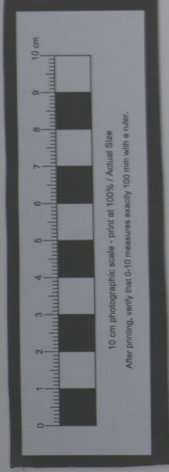
10 cm photographic scale - print at 100% / Actual Size

Handwritten text on a tilted document, likely a ledger or account book, featuring columns and rows of characters.

按票已選出此員全員一致三員
 以清案左者會長副會長財務書記
 已名被選外

同	同	同	評議員	書記	財務	副會長	會長
王永奎	王伯日	姜先吉	黃銀福	張銘基	林石根	葉漢成	張聖基

被選者立即任其職此呈請核示



“原本”

會 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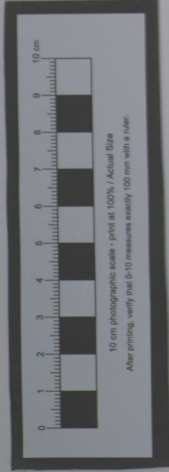
〃2-344 外仲潭

貞陵公會

各員表

同	同	同	評議員	書記	司庫	副會長
朴	王	姜	黃	張	朴	黃
永	伯	銀	銀	錫	石	璞
奎	日	福	福	基	根	成

此會為弘治元年金黃一教且因洪武年為立推選



眞陵公齊會 會則

제1장 (명칭 및 위치)

제1조 본회는 眞陵公齊會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78

번지에 둔다

제3조 재원으로 본회는 眞陵 一圓에 거주하는 유지간의 친목단

상과 양품미더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一圓

에 거주하는 만 20歲 이상 자로 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권

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장 (임원)

제1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 2명

(2) 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부이사장 1명

(5) 상임이사 3명

(6) 재감사 른 명

제七조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이사, 및 간사는 총회에 속한다

제八조 고문 및 회장은 중요한 회부에 자문 이용한다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에 이사장을 대행한다

사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九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五장 (회 의)

제拾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여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 이소집한다

제拾壹조 각 회의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과반수

제拾柒조 각회의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동으로 의
결하여 가부동수 인대는 의장이 이를
결함 한다

총회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단 대의원 선임은 이사회 결의를 득하
여 회장이 이를 선임한다

제拾捌조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예산 결산서

(2) 임원 보선

(3) 본회의 사업계획서

(4) 기본 재정증감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대의원 선임

(6) 기타 본회 업무처리상 긴급중요사항

제十九조

(재정 및 회계)

제拾參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간이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拾四조 본회의 재산 중 부동산 및 동산은 판하

본 회 명의로 한다

제 拾五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
에 준한다

제 拾六조 부속

본 회칙은 총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회칙은 원본 임의 < 위임 >

이사장

張 龍 基

부이사장

朴 石 根

상임이사

黃 漢 成

상임이사

柳 斗 連

상임이사

金 永 基

상임이사

朴 永 基

상임이사

張 鉉 基

[illegi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토지분편 등기신청

전	서기	년	월	일	지	전	수	조	사	인	감	기	입	색	출	표	합	등기필지	가	분	지
---	----	---	---	---	---	---	---	---	---	---	---	---	---	---	---	---	---	------	---	---	---

토지분편 등기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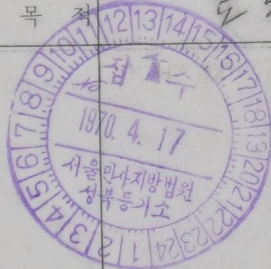
접수	서기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지	각종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본말권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88번지 1/2 대충 4평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88번지 1/2 대충 4평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88번지 1/2 대충 4평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1970년 4월 17일 분할

등기의 목적 토지 표시 변경



15333

신청인 具陵公方舍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88번지 1/2
 대표 張 昭基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88번지 1/2

대리인 사법사 梁 英 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557번지

서기 1970년 4월 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청북등기소 귀중

부속서류

원입장 具陵公方舍
 토지대장등본 具陵公方舍
 전의사 具陵公方舍
 안장증명서 具陵公方舍
 회계등본 具陵公方舍
 원본 具陵公方舍
 신청서부분 具陵公方舍

등	록 세 금 欠百兩 張



진행제 原 호 서기료금 四〇〇 원 사범서사 梁 美 施



진행제 112 호 서기료금 400 원 사법서사 梁 施

접 수	서 기	년	월	일
	제	15333 호		

1970. 4. 17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동기소

등 기 필

